

창원지방법원 2024. 4. 5 선고 2023나104236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4. 5 선고 2023나104236 판결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3. 8 선고 2021가단273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3. 22.

판결선고 2024. 4. 5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3. 8. 선고 2021가단273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2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선해한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3면 17행 및 19행의 각 “하고 있다.”를 각 “하였다.”로 고친다.

○ 제7면 5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임대인인 C조합 내이동 지점이 2021. 8.분부터 2023. 3.분까지의 임대료 미납 확인서를 발급한 점으로 보아 원임대차계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을 제18호증을 비롯하여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C조합 내이동 지점의 2021. 7. 7.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 중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